20.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출일자 : 2021년 6월 4일
- O 제 출 자 : 송영헌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, 김지만 의원, 안경은 의원, 이태손 의원

임태상 의원, 전경원 의원, 하병문 의원

- O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- O 상정일자 :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교육위원회(2021년 6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송영헌 의원)

- □ 제안이유
 -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,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O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(안 제4조)

- O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, 예외 규정 등 내용 구체화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O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O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재계약, 계약의 해지 규정(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)
- O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5조)
- O 민간위탁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(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O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,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,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O 주요 내용으로는

- ▶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,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규정하면서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체 적인 내용을 명시함
- ▶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,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, 공개모집 원칙 등 수탁 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

- ▶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명시함
- ▶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, 수탁기관의 책무,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재계약, 계약의 해지에 대해 규정함
- ▶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,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▶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, 민간위탁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·감독, 사무편람, 연 1회 이상 처리상황 감사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O 검토 결과

- ▶ 본 제정 조례안은,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(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)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
- ▶ 특히,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마련 및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, 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, 수탁기관의 선정・감독・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

▶ 다만, 수탁기관 선정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는 만큼 위탁사무별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,
의회의 동의를 통한 실질적인 견제가 되도록 민간위탁사업별로 최초 위탁일 및 재위탁 또는 재계약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O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O 없 음

7. 심사결과

O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O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 음